

기업결합심사제도

유희상 /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

1. 머리말

최근 몇 년간 기업결합신고건은 '96년 393건에서 2000년 703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IMF구제금융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결합이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결합은 기업의 소유·지배·경영의 주체를 혁신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다. 반면에 역기능으로서 독과점 형성을 통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즉, 기업결합은 시장에서의 경쟁자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당해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독과점 가격의 형성 등을 꾀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초래된다.

따라서, 각 국은 기업결합심사제도를 두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7조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2.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기업결합은 이론적으로 개별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하나로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으로 정의된다. 통상 외국에서는 M&A(Merger and Acquisition)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임원겸임은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에 한해 규제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않는 단독회사 신설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합작회사 설립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결합은 거래형태에 따라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으로 분류된다. 수평결합(Horizontal Integration)은 동종 기업간의 기업결합(예: 자동차 제조업체간 기업결합)이며, 수평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의 폐해는 독과점적 초과이윤의 발생, 신규진입 저지를 위한 가격형성, 담합촉진 등을 들 수 있다.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은 상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인접한 단계에 있는 기업간의 결합(예: 정유회사와 유류판매업체, 자동차 제조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이며, 수직 결합에 있어서의 경쟁제한 폐해는 시장봉쇄, 진입장벽 형성 등이 된다.

혼합결합(Conglomerate Integration)은 수평 · 수직결합 이외의 모든 기업결합을 말한다. 혼합 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폐해는 잠재적 경쟁저해, 상호거래, 진입장벽 형성 등이다. 혼합결합은 통상 상품확대형 혼합결합과 시장확대형 혼합결합, 순수 혼합결합으로 나뉘어 진다.

3. 신고대상 및 신고시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시행령 제18조)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취득회사뿐만 아니라 피취득회사가 상기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0. 12월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신기술금융사업자 또는 신기술금융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가 면제된다. 신고대상인 기업결합은 다음과 같다.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 등록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대규모회사(계열회사를 포함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 기업결합 신고시기 ■

구 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 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합병	합병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영업양수	영업양수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회사신설 참여	회사신설에 대한 주총(이사회) 의결일부터 30일 이내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합병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영업양수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회사신설 참여	배정된 주식의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	주식취득	주권을 교부받은 날,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주식매매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	

-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의 단순 분할의 경우는 제외)

기업결합의 신고시기는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로 나뉘어 진다. 사전신고는 대규모회사가 당사회사가 되는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가 해당되며, 나머지 경우는 사후신고에 해당된다.

의무적인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대규모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사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사전에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기업은 사전·사후 신고를 막론하고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법 위반여부를 심사요청할 수 있다. 의무적 기업결합신고의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4. 기업결합 심사유형 및 심사내용

가. 기업결합 심사유형

신고된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은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심사 등 간략한 절차를 통해 심사처리한다. 간이심사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은 특수관계인 간의 기업결합,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기업결합,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하는 혼합결합이 있다. 간이심사대상 외의 기업결합은 일반심사대상이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통상 30일(필요한 경우 총 90일 까지 연장) 이내에 처리된다.

나. 기업결합 심사내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힘(시장지배적 지위)을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 결합 전과 비교하여 시장구조 및 행태가 비경쟁적으로 변화하여 유효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형성·강화되는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보통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와 협조효과(Cooperative Effect, 또는 Coordination Effect)로 나타난다. 단독효과는 같은 시장에 속해 있는 상품이라도 상품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타사업자의 협조 또는 타사업자와의 공동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가격인상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단독효과라 한다.

협조효과는 다른 사업자와 담합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정도를 밀하며 이는 가격구조의 투명성, 담합 이탈에 대한 감시의 용이성, 상품간 대체성의 크기 등에 의존한다. 경쟁 제한 여부의 판단은 결합유형(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에 따라 시장점유율, 신규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해외수입상황, 결합 당사회사의 원재료 조달능력·기술력·판매력·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경쟁제한성의 추정은 시장집중도를 기초적으로 판단한다. 공정거래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기업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의 합계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경쟁 제한성이 추정된다.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상위 1사업자 50% 이상, 상위 3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하고,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며,
- 제2위 회사와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 또한 대규모회사가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이고,
- 당해 기업결합으로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이 법상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반증 사유가 없는 한(당사회사가 입증책임) 당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은 수평결합에서 결합 후 점유율 합계가 상위 1사 점유율이 50%이거나 상위 3사 점유율 합계 70%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적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중점 심사하고 있다.

수직결합의 심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가 고려된다. 수요자·공급자 관계에 있는 결합 당사회사의 상·하부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점유율 합산) 합계가 모두 수평결합의 시장집중도 기준(상위 1사 50% 이상, 상위 3사 합계 7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수직결합의 심사에 있어서도 시장점유율 외에 기업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의 다른 공급선 또는 판매선 확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등의 제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나아가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은 진입장벽의 증대여부 등도 고려요소가 된다.

혼합결합은 보통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수한 경우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즉, 혼합결합이 있기 전에는 경쟁사업자 간의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어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균형을 깨는 요소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현격한 자금력 차이의 존재, 고도의 기술수준, 막강한 판매망 및 마케팅 능력 등이 된다.

기업결합심사기준은 ① 취득회사가 대규모회사일 것, ② 취득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적 진입자일 것, ③ 상대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상위 1사 50% 이상 또는 상위 3사 합계 70% 이상 기준에 해당할 것, ④ 취득회사와 상대회사의 경쟁자간에 사업규모, 자금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등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 기업결합 예외인정 요건

공정거래법 제7조제2항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예외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인데 다음 3가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①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로서 가까운 시일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

하고, ②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③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둘째,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인데, 다음 3가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1이상이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하고, ②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우며, ③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이다. 회생이 불가한 회사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상당기간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지 여부
-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 파산, 회의개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의 신청이 있었던 회사인지 여부
-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

5. 시정조치 및 벌칙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거나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인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6조).

- 당해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법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제기

또한 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 1일당 기업결합금액의 1만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임원겸임인 경우는 1일당 200만원이 부과한도이다.

6. 기업결합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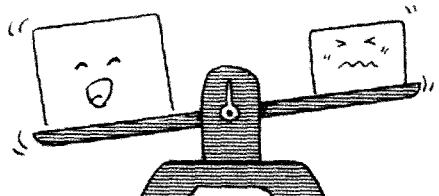
기업결합신고건수는 기업구조조정 필요성 등에 따라 '99년 557건, 2000년에는 703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도 증가하여 '99년 2건, 2000년 4건에 대하여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 기업결합 처리현황 ■

(건)

	'96	'97	'98	'99	2000
전체기업결합	393	418	486	557	703
시정조치	1	-	3	2	4

불공정 하도급 거래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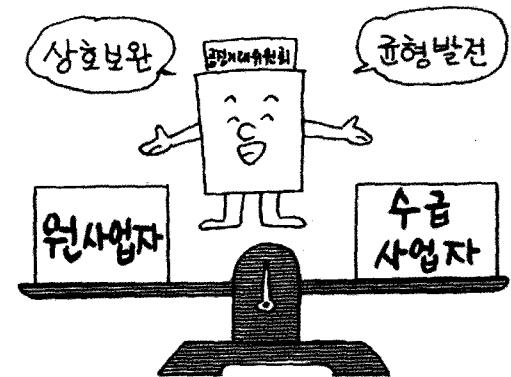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으로 부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대기업과 정면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원사업자에게 꼭 지켜야 할 몇가지 의무 사항을 제시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협력있게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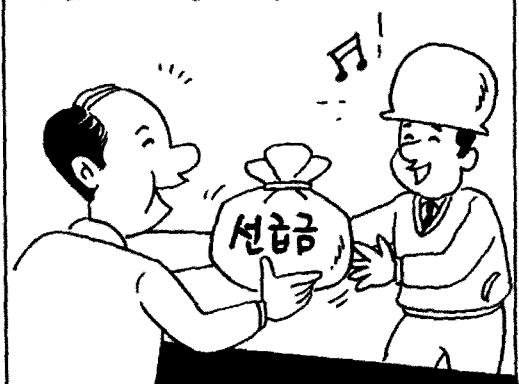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발주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나 제조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